

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참여기관(업체) 모집

1 목적

- 창원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역 기업 및 기관 현장에서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인재와 지역 기업(기관)의 취업을 연계함

2 운영일정(안)

- 실습기간(안) : **법정공휴일 등 실습기간에서 제외**

- 4주: 2020.12.22.(화) ~ 2021. 1.20.(수) (20일)
- 6주: 2020.12.22.(화) ~ 2021. 2. 3.(수) (30일)
- 8주: 2020.12.22.(화) ~ 2021. 2.19.(금) (40일)

- ※ 실습기간 내 **법정공휴일**을 제외한 **결석일**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**연장근무** 요청
- ※ 실습기간(안)은 **권장사항**이며, 학교와 협의 후 조정 가능

- 운영일정(안)

연번	절 차	대상	내 용	온라인 시스템 활용	기 간
1	참여신청서 작성	업체	- 참여신청서 작성 - 운영계획서 작성 필수 ('수업'요건 검토 기준)	1. 부서관리-등록 2. 참여신청서작성-현장실습명 선택(4,6,8주)- 신규등록	10월~11월
2	학생-실습기관 매칭	학과, 센터	(학생) 실습기관 지원 (실습기관) 학생 선발	신청관리-현장실습기관조회-신청 지원자선정-선발여부(선발/탈락)	11월 중
3	협약서 작성	업체 센터 학생	협약 진행 (학교,학생,업체)	1. 실습기관 정보- 직인등록 2. 지원자 선정-실습기관 3자협약	12월 초
4	현장실습 보험가입	센터	상해보험 가입 (학과→센터→보험회사)		12월 초
5	산재보험 가입	업체	산재보험 가입		실습시작 전
6	사전교육 실시	센터	안전교육/ 인성교육실시	예정	12월 초
7	현장실습 시작	업체	출근부 작성	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-출근부	12.22.(화)~
8	현장방문지도	교수	방문지도보고서	방문보고서 및 평가표 입력	종료 1주 전
9	현장실습 종료	업체	학생 평가표 작성	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-평가표	실습 종료일
10	경비 지급	센터	보고서 검토 후 일괄 지급		2021. 2 중순

3

실습기관 운영 기준

□ 실습기관 역할

- 현장실습생 교육,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배치
-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(참여신청서 작성)
-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
- 현장실습생 지도, 출석부 및 평가표 작성

□ 협약체결

- 대 상: 실습기관 · 학교 · 학생
- 협약기간: 현장실습 기간 동안
- 방 법: 온라인시스템에서 협약진행(전자관인 등록)

□ 산재보험가입[첨부1 참조]

4

세부 운영 기준

□ 학기제와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기준

구 분	운영시기	실습기간(시간)	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
학기제	1학기, 2학기	12주 이상	- 학사규정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 - 성적은 S/U로 부여 함
계절제	동계방학, 여계방학	4주 이상	

□ 현장실습 운영 시간

- 전일제(1일 6시간 이상)로 4주이상 연속 운영
-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
-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 운영 가능

-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.
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은 일수(국가공휴일, **업체휴가일**, **개인결석** 등)에 대한 **연장근무**(주말 활용 가능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현장실습지원비

-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비용 지급 (공공기관: 예산 미편성인 경우 미지원 가능)
-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
-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, 「최저임금법」 및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

5 대학 지원내용

구 분	LINC+사업 참여 학과(전공)	LINC+사업 비 참여 학과(전공)
지원부서	LINC+사업단	학사지원과
참여학생	상해보험 가입, 학생지원비, 마일리지	상해보험 가입
참여업체	업체 관리비 학생 1인당 10만원 (담당자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)	-
지도교수	추후 알림	-

- ※ 대학 지원의 경우 LINC+사업 평가 후 재원 확보시 지원
- ※ LINC+사업 참여 학과(전공)의 경우 LINC+사업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름
- ※ 지원비 지급: 2021. 2월 중 예정
- ※ **온라인시스템-부서관리-업체관리비 수령여부 체크 및 계좌정보 등록에 따름**

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

□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근거

- 현장실습생은 **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**에 해당하여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**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**, 고용노동부고시[제2018-69호] 개정에 따라 **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**에 해당됨

□ 가입 안내사항

- **적용대상:**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
- **가입방법:**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「근로자 고용신고서」 제출
(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)
- **보험료:** 훈련수당 X 업종별 보험료율 (보험료징수법 제13조)
※ **무급** 현장실습의 경우도 **신고/ 단, 산재보험료 발생하지 않음**
- **보상범위·수준:**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 (요양휴업급여 등)
※ 훈련수당이 없거나(**무급**) **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**

□ 신고·납부 의무 발생

- **신고 기간:**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‘근로자 고용신고서’ 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
- **납부 기간:** 월별 현장실습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